

2020년 제2회 건축소위원회(건축구조분야) 심의결과

☐ 제1호 안건

신 청 인	(주)스타필드 청라	심의내용	구조안전심의(신규)
신청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6-14외 2필지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일자	2020. 2. 20.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 아래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견】

1. 장스팬 구조에 대하여 내력 및 사용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2. 골조시공 후 현장 재하시험 등으로 안전을 재확인하기 바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소위원회

2020년 제2회 건축소위원회(건축구조분야) 심의결과

☐ 제2호 안건

신 청 인	(주)태릉건설	심의내용	구조안전심의(변경)
신청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7-2번지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일자	2020. 2. 20.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 아래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견】

1. 보통전단벽(성능기반해석) 적용 기재하고 구조계산서, 구조일반사항에 명확히 표현 바람
2. 인접건물(청라동 97-3번지)은 지내력기초로서 동일 기간에 굴토공사하므로 파일 흔들림 등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정에 반영 바람
3. 청라동 97-3번지 신축예정 건물과 장식보로 연결되어 있고, 구조해석에는 없는 부재로서 구조체 및 마감재에 대한 안정성 검토 요함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소위원회

2020년 제2회 건축소위원회(건축구조분야) 심의결과

☐ 제3호 안건

신 청 인	(주)태릉건설	심의내용	구조안전심의(변경)
신청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7-3번지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일자	2020. 2. 20.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 아래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견】

1. 사전검토의견 조치사항 반영할 것.
2. 보통암으로 되어 있는 대지에 지내력 기초로서 인접건물(청라동 97-2)은 파일기초로서 보통암 파파시 인접건물 기초가 손상되지 않도록 공정검토시 반영바람
3. 청라동 97-3번지 신축예정 건물과 장식보로 연결되어 있고, 구조해석에는 없는 부재로서 구조체 및 마감재에 대한 안정성 검토 요함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소위원회

2020년 제2회 건축소위원회(건축구조분야) 심의결과

☐ 제4호 안건

신 청 인	(주)지앤케이로지스틱스	심의내용	구조안전심의(변경)
신청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89-4 외 1필지		
심의결과	재검토 의결	심의일자	2020. 2. 20.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 아래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견】

1. 지반조사가 부족하여 검토 필요
2. 구조물 시공·운영 단계에서 지반침하가 예상되나 현재 지반의 압밀상태, 침하 예측, 침하 대응방안의 구체적인 계획·검토가 부족
3. 구조설계의 지진하중 지반에 대한 재확인(S5, S6)
4. 시공시 설계자 의도가 오류가 없도록 도서간의 내용일 요망(5개동 구분 할 것)
5. 기반암이 50m 깊이 이하로 있으므로 장기침하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함
6. 지반분류를 S5로 하였으나 기반암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규정 재확인 필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소위원회

2020년 제2회 건축소위원회(건축구조분야) 심의결과

☐ 제5호 안건

신 청 인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심의내용	구조안전심의(변경)
신청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5-2번지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일자	2020. 2. 20.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 아래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견】

1. 지하 주차장의 기둥 지판의 크기를 증가시켜 전단에 유리하도록(시공성 향상) 재검토 바람
2. 지하 1층 드롭패널 주변 배근에 대한 심의검토 사항을 다시 정리하여 시공도면에 반영 바람